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재현 의미

박 애 경

서울서원초등학교

I. 서론

글로벌화(Globalization)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상호연결성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현상으로 세계가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인식의 산물이다. 문화를 인류의 모든 의식과 생활양식 총체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 글로벌시대라는 사공간적 배경에서 문화의 다양성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개방화, 경제와 정보의 세계화, 삶의 질 향상 등의 영향으로 보다 많은 교육적, 과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내용들에 접근하게 되어 보편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얻게 되었다. 인류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중계로 알게 되며 맥도날드나 스타벅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비슷한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동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지니고 다양한 집단, 다양한 사회, 다양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이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글로벌시대 경제적 획일화에 대항하여 인류 생활양식의 총체이자 정체성의 중심인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주목받은 바 있다.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제안된 문화다양성 선언은 그 필요성이 국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에 이른다. 이 협약의 내용이 문화를 산업으로 분류한다거나 일부 국가들의 편익을 위해 이용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나 전 세계 148개국이 협약 체결에 동의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다양성개념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자체의 필요성이나 범위, 내용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선언과 협약이 이루어진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은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등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사회적 소수자 문제와 함께 국제 교류가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 이주민의 증가로 인해 사회 통합과 관련한 다양성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문화다양성의 확대도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며 이를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여 앞으로 문화다양성 개념의 사회 적용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성립된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종류의 포럼과 국제회의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문화의 세계화에 바탕을 둔 협약의 배경, 의의, 조약으로서의 의미, 세계경제 획일화의 상징인 WTO와의 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는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제법이나 국제규범과 충돌

할 것을 염려하여 우리나라가 가입을 꺼려온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1일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문화다양성의 가입을 위한 필요성 논란이 아니라 이 개념을 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II.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맥락

글로벌화에 대한 주장들은 크게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치 분야에서 세계화는 냉전 시기를 벗어나면서 민주주의라는 비슷한 정치 이념을 지향하고 여러 종류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전 세계를 아우르는 법체계와 정치권력 체계를 가진 지구적 정치체계의 설립을 목표로 해나가고 있다. 경제 분야의 세계화는 확실히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분야로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자본에 의해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일되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세계화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에 반하여 문화 분야에서는 각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자유무역의 원칙을 옹호하는 국가들조차 문화 분야에서는 오히려 국가의 개입과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유독 문화 분야에서만 '다양성' 존중을 주장하는 이유는 물론 고부가가치를 지닌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문화 정체성이 그 나라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생존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창민, 2005: 5-6). 그러나 세계화(Globalization)의 물결이 문화 영역에 있어서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대해서는 평화 속에 '하나된 세계'를 구축한다는 세계시민주의적(cosmopolitanism) 기대와 특정 문화의 지배에 의한 세계 문화의 '동질화'(homogenization)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한다(Tomlinson, 1999; 김정수, 2008: 268에서 재인용).

상이한 문화들 간의 교류가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 입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어느 특정한 문화가 다른 문화들을 지배하면서 결국 동질적인 세계문화를 형성한다는 문화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적 시각으로 중심부 국가인 서구사회의 문화가 팽창적으로 주변부 국가에 침투하여 문화적 독창성을 파괴하고 문화 간의 지배-종속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전제하는 문화와 문화가 접촉하였을 때 그 사이에 일어나는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들이다. 전통적인 문화전파이론(diffusion theory)에서는 두 사회의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를 채택하고 수렴함으로써 상호 유사성이 증가하는 문화변용에 초점을 맞춘다. 문화소비자의 적극적 반응을 강조하는 문화수용이론(reception theory)에서는 외래문화에 대한 재해석,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 혹은 토착화 가능성을 인정한다. 문화의 글로벌화는 지구촌과 대응할 수 있는 동질화된 관점으로 개념화될 것이 아니라 서로 상이한 국가들과 권역들에서 생겨나고 그것들이 글로벌 문화를 구성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현상으로 인지된다는 주장이다(Crane, 2002: 1).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새로운 이질적인 지역 문화들이 생겨나고 상호공존하게 된다는 시각도 있다(Warnier: 1999; 김정수, 2008: 268-269에서 재인용). 즉, 문화의 글로벌화는 글로벌 문화자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완전히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며 글로벌 문화가 긴장과 경쟁과 갈등이 가득한 다차원적인 과정임을 강조한다.

<표 II-1> 문화 글로벌화 모델들

| 모델 | 문화이행의 과정 | 주요 활동가들과 장소들 | 가능한 결과들 |
|--------------------------------|-------------|-----------------------------------|---------|
| 문화제국주의 미디어제국주의 | 중심-주변 | 글로벌 미디어의 복합기업 | 문화의 동질화 |
| 문화적 흐름들/네트워크들 | 쌍방향 흐름들 | 권역별, 국가별 복합기업과 회사들 | 문화의 혼종화 |
| 수용이론 | 중심-주변, 다방향적 | 관객, 공중, 문화기업들과 모니터들 | 협상과 저항 |
| 문화정책 전략들(보존, 저항, 다시 틈짜기, 글로벌화) | 민족문화의 틈짜기 | 글로벌 도시들, 박물관, 문화기억, 미디어, 문화부, 무역부 | 경쟁과 협상 |

※ 출처 : Crane, 2002: 2

<표 II-1>은 글로벌 문화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의 주요개념을 설명한 것인데 이 중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다양한 문화의 상호 교류라는 면에서 글로벌 문화의 정의에 가장 적합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모델이 갖는 공통점은 문화를 다양성의 요소, 상호소통이 가능한 요소들로 일반화한다는 점이다. 즉 글로벌 문화의 기초는 문화다원성, 문화다양성에 기반한다는 견해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이동연, 2006: 81). 문화를 이렇게 상호교류가 가능한 동등한 요소로 바라보는 것은 제국주의적 시각의 문화글로벌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필요성에 대안으로 등장했다는 의견도 있다(칸클리니, 김창민 외 편역, 2005: 117-140).

문화의 다양성 담론과 관련하여 문화들을 서로 비교가능하고 상호간에 교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각각의 문화가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에 따라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에 대한 인정이 문화다양성 논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문화정체성을 별도의 권리로 촉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인권론에서 출발하는데(돈더스, 2008: 20)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27조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언급함으로써 인권의 내용에 문화적 권리가 포함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김세훈, 2006: 26). 곧, 문화적 권리가 문화적 표현이나 창작의 자유 등 단순히 개개인의 일상적 취향이나 태도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로서 그 실행이 사회적으로 보장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정치나 사상의 개인적 자유를 중심으로 했던 인권의 개념이 크게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토착민에 대한 억압과 소수민이나 이주자에 대한 강제적인 동화와 같이 생존과 관련된 문화적 권리에 대한 수많은 침해가 있었기 때문에 문화권을 명확히 하고 보호하자는 요구가 증대해 왔다(돈더스, 2008: 21).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아직도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거나 보존할 수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존재하고 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그들을 보호할 문화정체성을 포함한 권리를 필요로 한다. 이들,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에 대해 김세훈(2006)은 정치적, 경제적 소외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외로 인해 다양한 가치와 삶의 태도, 사고방식의 경험 기회의 배제로 인하여 형식적인 면과 내용적인 면 모두에서 사회의 소외집단으로서 고착화된다고 주장한다(김세훈, 2006: 27-28). 그 결과 이들과의 사회적 통합이나 교류에 대한 문제는 그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의 문화적

권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도 연관되어 있다. 글로벌화에 따른 다양성의 심화에 따라 문화다양성은 문화들의 정체성이나 융합의 문제와도 연관되며 따라서 문화적 기본권과 문화다양성 논의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문화들은 글로벌시대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시시각각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계가 갈등이 되어 나타날지, 아니면 수용과 상생을 통한 긍정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인지는 공동체 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는가에 달려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는 결국 문화다양성을 어느 대상에,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느냐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곧 글로벌 시대와 문화다양성 간의 균형과 조화를 찾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문화다양성 논의의 핵심에는 기존에 소수를 주류 사회에 동화시키려는 전통적 문화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려는 노력이 존재한다. 이는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다양성의 의미와 범위가 변화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소수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현대의 소수자 다양성운동과 병행하여 지속되어 왔다. 인류는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인 책임으로 인종, 민족, 성별에 있어서 소수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의 경험은 인종, 민족, 성별에 있어서 소수집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써 법적 의무를 요구해 왔다.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대표적이며 주된 제도적 장치는 소수자 우대 정책인 Affirmative Action¹⁾을 들 수 있다(양기근, 2001: 127).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성의 의미와 범위도 변화하였으며 특히 현대사회가 글로벌화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문화와 다양성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종일(2010)은 현대사회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성의 의미를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이종일, 2010: 107-109) 20세기 후반 글로벌화가 심화된 이후 사회적 특징을 고려하여 이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재구성해 <표II-2>로 나타내었다.

<표II-2> 역사적 변화에 따른 다양성의 의미 확장

| 다양성의 의미 | | 역사적 배경 | 포함하는 개념 및 의의 | 가치판단적 요소 |
|--------------|-----------------------|------------------------------------|----------------|----------|
| '여러 가지'의 다양성 | | 전통적, 일반적 의미 | 가치중립적 | × |
| 생물학적 다양성 | | 다원 '종의 기원' | 새로운 차원의 다양성 | × |
| 글로벌화의 심화 | | | | |
| 상호존 적 의미 | 평등의 의미가 포함된 다양성 | 세계 2차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발달 및 글로벌시대의 확대 시작 | 민주주의 원리로서의 평등 | ○ |
| |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다양성 | 글로벌, 다문화시대 | 적극적, 실질적 평등 실현 | ○ |

1) Affirmative Action: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미국의 적극적 정책을 말한다. 미국에서 1960년대에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될 당시에는 여성과 소수집단의 고용에 대한 '인위적 장벽(artificial barriers)'의 제거를 의미했으나, 그 뒤 불우집단에 대한 보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는 인종, 성, 장애를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당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미국 정부의 행동계획 및 실천 활동이다.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6909> 검색일 2011.06.05)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가치를 가진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글로벌화의 본격적인 등장 이후 나타나게 된 다양성은 근대화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고 인식, 실천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상호의존적 의미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긍정적 요소라면, 현실에서 평등을 실천하는 수준 차이에 따라 소수자에 대한 평등의 실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다(이종일, 2010: 110). 기회 중심의 소극적 평등인가, 결과 중심의 적극적 평등인가에 따라 평등의 실천적인 면은 논쟁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가치판단의 요소가 포함된 논의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중심으로 <표 II-3>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3> 가치판단이 포함된 다양성 의미의 구분

| 가치의 요소 | 논의의 성격 | 사회의 일반적 태도 |
|-----------------------|--------|------------|
| 다양성의 의미 | | |
| 상호의존적 의미 | 이상적 | 수용 |
| 평등의 의미가 포함된 다양성 | 현실적 | 논쟁 |
|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다양성 | | |

상호의존적 의미는 여러 종류의 문화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의미로 그 논의의 성격이 이상적(ideal)인 만큼 사회적으로도 수용적 분위기를 지닌다. 그래서 ‘다양성’은 사회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논란이 되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을 보장하는 다양성이다. 평등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소수자의 평등 보장에 대한 사회 정책은 각 사회의 특징에 의해 다양한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2) 이는 그만큼 사회에서 소수자 보호에 대한 담론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화의 심화와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로서 이민자의 급증은 최근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에 대한 권리를 사회 논란의 중심으로 가져왔으며 이는 곧 문화다양성의 핵심 문제와 연결된다. 소수자(minority)는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사회의 다른 성원에게 차별을 받으며,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박경태, 2008: 13).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소수자는 항상 존재해왔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회의 주류 세력과 비주류의 구분과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는 언제나 있어 왔으며 그들에 대한 차별 또한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데에는 사회의 새로운 흐름이 주요배경이 되었다. 글로벌화의 확대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되면서 관심이 크게 증대된 것이다.

2)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샌델(Michael J. Sandel)은 논란이 되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의 예시로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 대 세릴 흡우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의 지지자들은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 바로잡기,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다양성 증대를 그 이유로 제시한다. 이 중 보상논리는 사실 적극적 다양성의 핵심 논리이고 다양성 증대는 상호의존의 다양성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과거의 불평등을 보상하거나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인 지역발전과 공동선에 대학이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반대 의견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소수집단 우대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는 경우와 원칙적 반박으로서 다양성을 따지는 차원에서 입학에서 인종이나 민족을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Sandel, 이창신 역, 2010: 235-244).

최근의 사회적 소수자 보호는 ‘사회정의’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 때 정의는 경우에 따라 ‘올바름’이나 ‘공정성’으로 여겨지기도 한다(이정우, 2004: 330). 최근에는 평등의 의미가 확대되면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소수자들의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회정의가 새로운 의미로 추가되어 사용된다. 김리카(Kymlicka)는 다수자들과 달리 소수자들은 불평등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꾸로 집단적 차별을 통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Kymlicka, 장동진 외 역, 2010: 234). 주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소수자들의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며, 자유평등의 이념에 합당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박경태(2008)는 소수자 차별이 다수자의 기득권과 직접 연결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규범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은 발생 초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란은 정책에 대한 단순한 찬반을 넘어 사회 정의에 대한 시각 차이를 반영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 통합의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박경태, 2008: 266-267). 최근 소수자 인구가 다수자인 백인의 인구보다 많아진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공공기관의 고용, 공교육, 공공 계약에서 차별 혹은 우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1996년 소수자 우대정책이 철회되기도 하는 등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Ⅲ.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분석

1. 성립 배경 및 특징

미국은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문화 분야를 무역에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무역 대상으로 취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프랑스는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문화적 예외(exception culturelle)’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1993년 GATT 협상에서 자유경쟁 시장 체제 하에 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는 서비스 자원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자유경쟁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이성미, 2006: 12-13). 따라서 문화적 예외는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프랑스는 이것을 문화의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 문화적 예외의 타당성을 문시연(2007: 167)은 “문화는 한 국가를 구현하는 본질로서 경제적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보전, 장려해야 하기 때문이며, 무역의 심각한 불균형 속에서는 자유경쟁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Christophe Kantcheff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 이는 “종종 방어적인 내용을 함여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문화의 교류를 억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이성미, 2006: 13에서 재인용).

이렇게 1995년 WTO가 출범하기 전까지 문화와 무역에 대한 논의는 일반 상품과 구별되는 문화의 특수한 성격을 인정하여 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화적 예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의 몇몇 사건들을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997년, WTO 분쟁해결기구가 캐나다와 미국의 정기간행물 분쟁에서 캐나다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일은 캐나다-미국 FTA의 문화적 예외 조항이 실제로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증명하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체결을 추진하던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이 문화의 다양성을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협상이 중단된 일도 있었다. 이러한 예들은 신자유주의 질서가 문화다양성 뿐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 국가 주권, 국가 정체성에도 심각한 위협을 미칠 수 있음

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다(Carter, 조효제 역, 2007: 312-316). 문화적 예외 개념의 한계를 체험한 국제 사회는 이를 넘어서기 위한 인식의 전환의 필요를 느꼈고 1995년에 제출된 유네스코의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보고서에서 제안된 '문화다양성'은 이에 대해 새로운 국제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주로 문화의 예술적 결과물에만 관련이 있는 '문화적 예외'의 보호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개방과 공존의 정책을 위해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용어인 '문화다양성'이 힘을 얻게 된 것이다.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인류 사회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사회적 관습의 총체를 통합하는 명료한 인류학적 토대를 갖고 있다(문시연, 2005: 5).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국적, 다양한 장르, 다양한 수준, 규모, 형식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위해 보호 정책이 필요한 것처럼 문화적 생태계도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며, 근대 국가의 성립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소수 문화가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한다.

결국, 2001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31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164개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각 나라,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유네스코 현장 서문과 문화다양성 12조로 구성된 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다양성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보고 있으며, 이의 보장 필요성을 중심으로 그 정의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다. 서문에서는 '문화의 광범위한 보급과 정의자유평화를 위한 인류 교육은 인간의 존엄에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모든 국민이 상호지원과 관심으로서 완수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 선언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으며 구체적 규범들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에 법제화된 규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협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문화 관련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를 통해 협약을 채택하기로 합의되었고 이에 따라 2004년과 2005년 세 차례의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최종적인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을 지지하기 위해 1985년 탈퇴한 유네스코에 2003년 재가입하고 핵심내용을 제외한 협약의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협약의 기본 목적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협약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이라는 최종 명칭으로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 상정되었다.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서는 이 협약을 찬성 148, 반대 23, 기권 4의 결과로 공식 채택하였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3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2007년 3월 18일에 공식 발효하였고, 2010년 4월 110번째로 가입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11년 6월 현재 117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협약에 가입하였다.⁴⁾

문화다양성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개념 자체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문화에 대한 인식을 중요시했던 이전부터 문화적 예외의 개념을 거치고 문화다양성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해준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문화들이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속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발생한다(Martiniello, 윤진 역, 2008: 65).

연구 보고서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이슈 : 검토 및 전략, 1946~2000』은 문화다양성 개념이 네 가

3) 반대 2개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이다.

4) 유네스코 홈페이지 문화다양성 협약 사이트 참고

portal.unesco.org/la/convention.asp?KO=31038&language=E (검색일, 2011.06.11)

지 국면을 거쳐 발전해 왔다고 분석하였다(오불젠, 2008: 111). 이 발전과정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특정 사회 '내부'의 문제로 파악하는 접근방식이다. 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각 개인들이 가지는 다양한 정체성과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들이 합쳐져서 한 국가의 정체성이나 다른 형태의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본다. 이 방식은 기본 인권, 문화적 민주주의 촉진, 모든 소수자들(민족적, 성적, 언어적, 인종적, 성적 성향 등)의 동등한 참여에 초점을 맞춘다. 다른 접근방식은 특히 지난 20여 년 사이에 많이 논의된 것으로 다수의 국가, 사회, 문화들 '사이의' 문화다양성이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의 다양성은 국가 간, 문화 간에 문화적 상품과 서비스의 균형 잡힌 교류를 상징하는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제논리에서의 전 지구적 획일화에 대항하는 개념으로서 문화다양성은 국가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하며 이를 문화 산업면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오불젠, 2008: 111-112).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서로 상이해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상호배타적이지 않다. 사회의 범위를 일정한 하나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만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지방색이 존재함은 물론 직업이나 성별, 연령, 종교에 따른 하위문화 사회도 수없이 많다. 또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하나의 국가나 지구촌 전체를 사회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이 존재하며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가 존재하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문화다양성의 접근 방법은 그 흐름이 그동안 국가 대 국가, 사회 내부의 측면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법적, 규범적 측면과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원리로서 살펴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하겠다.

2. 문화다양성 협약의 구조

문화다양성협약은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위한 일반적인 규정과 원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2001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다양성의 모든 측면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양성 선언 8조-11조에 나와 있는 특정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문화적 상품 및 서비스는 정체성, 가치관, 의미를 전달하며 따라서 단순한 일용품이나 소비재로 간주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과 국가가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함과 동시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 국제적인 협력을 재규정해야 할 필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규정되어 있다(이기석, 2011: 9). 이러한 내용을 다룬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의 초안은 관련 국제회의 및 정부, 비정부 기관들의 오랜 논의를 거쳐 2005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정부 간 전문가 회의에서 제출되었다. 이 협약에는 아래 표와 같은 여덟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원칙에 II장에서 살펴본 다양성 요소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문화다양성 협약의 여덟 가지 원칙과 다양성

| 원칙 | 내용 | 다양성의 요소 |
|-----------------------|--|-------------|
| 1)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존중의 원칙 | 국제법에 의해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본 협약의 조항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문화적 다양성은 표현, 정보 교환, 의사소통의 자유를 비롯하여 문화적 표현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 등과 같은 기본 | 개인의 '평등' 요소 |

| 원칙 | 내용 | 다양성의 요소 |
|--------------------------------|--|--------------|
| | 적 자유가 보장될 때에만 보호받고 증진될 수 있다. | |
| 2) 주권의 원칙 |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채택할 주권을 지닌다. | 국가별 '평등'요소 |
| 3)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의 원칙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은 소수민족이나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하여 모든 문화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며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 소수집단의 평등 보장 |
| 4)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원칙 |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각국, 특히 개발도상국이 초기 단계에 있거나 이미 확립된 자국의 문화산업을 포함하여 문화적 표현수단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외적 노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상호의존적 요소 |
| 5) 발전의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상호보완 원칙 | 문화는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발전의 문화적 측면은 그 경제적 측면만큼이나 중요하여 개인이나 민족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기본적인 권리를 지닌다. | 상호의존적 요소 |
| 6) 지속가능성의 원칙 |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에 풍부한 자산이 된다. 현재와 미래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이다. | 생물 종의 다양성 |
| 7) 자유로운 접근의 원칙 | 문화다양성을 높이고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전세계 각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각 문화가 자문화를 표현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표현 수단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 평등, 상호의존적 요소 |
| 8) 개방성과 균형의 원칙 |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할 때는 다른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적절한 방식으로 증진해야 하며, 이러한 방안이 본 협약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함을 확인해야 한다. | 평등, 상호의존적 요소 |

문화다양성 협약의 원칙에서는 일부 소수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사회적 소수의 평등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보다는 전반적으로 '평등'과 '상호의존적 의미' 요소를 적용함으로써 소수문화도 그 안에 포함시키려는 양상을 보인다. 상호의존 요소가 이상적 성격을 가지며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수용적임을 감안할 때 문화다양성 협약의 원칙은 상당히 이상적(ideal)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평등'의 의미는 국가나 집단의 문화가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규정하는 기회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문화다양성의 논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소수자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실천적 내용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고 생각된다. 즉, 문화다양성의 기본 원칙은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상적 성격을 바탕으로 하며 소수자를 위한 실질적인 평등의 측면에서는 소극적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을 중심으로 전문과 7개의 장, 그리고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국가 간의 문화산업에 대한 통상내용 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사회적 약자로서 소수자를 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문화다양성 협약 본문 제4조가 문화다양성을 '어떠한 집단이나 사회의 문화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정의한 점을 들어 이 협약이 개인들의 다양한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기보다는 국가와 민족 간의 문화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에 편중되어 있다고 비판한다(이동연, 2006: 83). 그러나 문화다양성 협약에는 비록 그 비중이 크지 않으나 사회적 소수로서 개인의 문화권 보호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먼저 전문 4항이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상기'하여 국가 간 문화의 구분이 아닌 개인과 문화, 사회 사이의 상생 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의 성격을 제시하였으며 5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문화다양성의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전문 10항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 본문 제 2조 1항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원칙'은 모든 개인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표현 및 정보통신의 자유,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2항은 '주권의 원칙'으로서 문화정책의 채택에 있어서 당사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당사국의 내부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3항은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으로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의 5조 '권리 및 의무의 일반 규칙'에서는 1항에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협정에 따를 것을 강조하여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범위에서 인정할 것을 규정하였다.

7조와 8조에서 소수자의 문화 권리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 분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이기석, 2011: 11). 제7조 1항)은 당사국의 국내적 차원에서 문화적 표현 증진을 위한 조치로서 '소수자나 토착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및 그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 내부에서 소수자, 토착민, 여성 등을 취약 계층으로 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제8조 1항)은 '문화적 표현이 소멸의 위기,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거나 시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특수한 상황으로 규정하여, 이의 보존을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2항에 규정했다.

14조부터 16조에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는 개인이나 사회 안의 토착민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조항은 아니지만 국가들 사이에서 개발도상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수자'의 입장에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다. 14조)

5)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

1.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개인과 사회집단이 다음의 사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소수자나 토착민 등 다양한 사회집단과 여성들의 특수한 상황이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당사국의 문화적 표현의 창조, 생산, 보급 및 배포와 그 활용을 위한 기회 제공.
 - 나. 자국 영토 내 그리고 세계 다른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6) 제8조 문화적 표현의 보호를 위한 조치

1. 이 협약 제 5조와 제 6조를 해함이 없이, 당사국은 자국 영토 내의 문화적 표현이 소멸위기나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거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특수한 상황으로 정할 수 있다.
2. 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위 1항에서 언급한 상황에 놓인 문화적 표현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는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을 강화를 위한 방법을 제안하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적절한 협력을 장려한다. 3항에서 문화산업 및 기업 분야에서 개도국에 기술과 지식을 이전한다는 내용과 4항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또 15조8)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기반시설이나 정책의 추가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을 제안하며 16조9)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이상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16조는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측면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조항의 일부에 대해서는 문화를 동등한 것으로 보지 않고 우위에 있는 선진국 중심의 한쪽문화가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의미가 반영되었다고 하여 비판을 받기도 한다.

3.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의와 한계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의는 문화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문화적 예외' 인정이라는 소극적 접근을 넘어 문화다양성의 필요를 인정하고 이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인 국제법적 틀을 마련한 문화 분야 최초의 국제 규범이라는 데 있다(김정하, 2009: 12-13). 특히, 문화다양성 협약은 이전의 문화에 관한 선언들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이다. 이로써 문화다양성 협약은 그간 문화 분야에서의 국제규범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WTO 등 기존의 경제적 획일화 지향의 국제규범 사이에서 문화적인 면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은 모든 개별적인 문화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7) 제14조 발전을 위한 협력

당사국은, 역동적 문화 분야의 출현을 촉진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축을 위한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 개발도상국의 문화산업 강화

가. 개발도상국의 문화 생산 및 보급 역량 형성과 강화

나. 개발도상국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 및 국제적 배급망에 대한 접근성 확대

다. 적합한 지방 및 지역 시장 형성

라.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의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선진국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선진국의 적절한 조치 채택

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발도상국 예술가의 창조 작업과 이동성 증진을 위한 지원 제공

바. 특히, 음악 및 영화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적절한 협력 장려

2. 전략과 경영 역량, 정책 개발과 시행, 문화적 표현의 배포 증진, 중소기업 발전, 기술 활용, 기능 개발과 이전 등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정보, 경험 및 전문 지식의 교류를 통한 역량 강화

3. 특히, 문화산업 및 기업 분야에서 적절한 장려조치를 통한 기술과 지식의 이전

4. 재정지원

가. 제18조에 따른 국제 문화 다양성 기금의 설치

나. 기술지원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공적 개발 원조의 제공

다. 저리대출, 보조금 및 기타 기금 조성 기제 등 그 외 형태의 재정지원

8) 제15조 협력관계

당사국은 개발도상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부문 및 비영리 기구 간의 파트너십 개발을 장려한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파트너십은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요구에 따라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인적자원 및 정책 등의 발전에 역점을 둔다.

9) 제16조 개발도상국 우대

선진국은 적절한 제도적, 합법적 틀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문화 상품 및 서비스뿐 아니라 예술가, 문화 전문가, 활동가 등에게 우선적 대우를 허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되었다(정갑영, 2008: 265). 문화들의 평등과 관련하여 그동안 문화상대주의나 다원주의 등을 거치며 이론적으로 수없이 강조되었던 개념이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과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다양성협약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그 개념 자체의 모호성을 들 수 있다. 문화다양성 개념의 범위와 협약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의 초창기에도 세계인권조약에 담겨 있는 내용과의 중복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문화다양성은 각 문화들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 정체성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문화다양성이나 문화정체성 권리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 실정법상의 권리로 옮기기에 그 내용과 범위가 모호함을 문제로 삼아 새로운 권리의 추진 대신 기존의 인권 보호와 신장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주장한다(돈더스, 2008: 22-23). 이렇듯 모호한 개념의 배경에 따라 문화연구자들이 문화다양성의 담론을 마치 문화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여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는데(이동연, 2008: 243) 이런 개념의 비명확성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가장 큰 한계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문화의 경제적 면의 강조이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2001년도 문화다양성선언의 이상적인 모든 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문화다양성 선언의 1조부터 7조의 구문이 사라지고, 8조부터 11조의 항목 즉 문화상품과 서비스가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성격을 인정함으로써 문화상품이 단순한 상품이나 소비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만이 한층 더 확대 강조되고 있다. 전문 속에 정체성, 인권 및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전문에 그칠 뿐으로 본문에서는 문화의 상품성을 강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다양성 보호에 대한 다자간 협상 틀을 정하면서 정작 문화다양성 증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체성, 가치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꺼리며 이들이 언급되는 경우는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박선희, 2006: 203). 협약의 전문 18항¹⁰⁾과 제1조 사항¹¹⁾에는 문화활동이나 상품, 서비스가 상업적 가치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되며 독특한 본성을 인식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나 범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문화다양성 선언의 내용에 비하여 구체적인 규약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문화적 표현(cultural expressions)'은 오히려 문화다양성을 문화산업이나 서비스로 제한하여 그 의미의 폭을 한층 좁게 만드는 한계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은 그 의미를 각국의 문화적 자원이 다양하게 보존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집단 내의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대 국가, 민족 대 민족 간의 지켜야 할 다양성이란 의미가 더 크다(이동연, 2006: 83). 이는 앞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의 구성 원리를 다양성의 요소와 연관지어 볼 때 그 성격이 상당히 이상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즉, 사회적 소수문화의 강조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부분은 구체적인 실천요소로서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은 그 선언과 협약은 내용에서 대부분 국가 간의 문화 통상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주변부 민족종족문화에 대해서는 단지 '보존함'으로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소극적인 실천에 그치는 한계를 가진다.

10)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함을 확인하며,

11) 제1조 사항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의 특수한 성격에 대한 인정.

협약의 원칙에서 소수민족이나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소수문화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차원에 머무를 뿐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양성 요소에서 '소수를 위한 적극적 다양성'에 대한 논의 중 Affirmative Action과 같은 구체적 보호정책의 추진이나 이를 논의할만한 조항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또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주장 내용이 일부 선진국 중심적이라는 한계를 보인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최영재, 2009: 50-51). 국제사회에서는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개도국이나 제3세계 국가들이 소수에 속하기 때문이다. 문화다양성은 '소수'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인데 그 방향이 앞에서 언급한 14-16조의 내용과 같이 일부 국가를 일방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식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국 자본 중심적인 문화 흐름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도 되지 못한다. 또, 협약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규정이 있지만¹²⁾,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사회는 대부분 선진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선진국 시민의 의견이 곧 세계 시민사회의 의견이 될 가능성이 많다. 때문에 문화다양성 협약이 소수문화 보호의 필요성을 지키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인보다는 국가가, 그 중에서도 일부 선진국이 중심이 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개발도상국가가 협약에 가입해도 미국과 같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과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FTA 등의 무역 협상에서 문화 부문의 강력한 개방 요구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 협약을 통해 이익을 얻거나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와 영향력 확대에 협약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만이 가입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V. 결론

통계청 통계개발원에서는 2010년 사회보고서(Social reports) '한국의 사회동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주요 변화 상황을 지표통계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인구 부문의 가족과 가족 구성 부문, 교육 분야 그리고 직업 선택 기준의 변화와 계층 간 차이, 주거와 교통 등 경제 분야, 사회통합분야의 변화 모습을 통해 사회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계층별, 분야별로 세분화되고 그 차이도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통한 상호관계 개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 협약은 그 자체가 갖는 의의가 크다. 문화다양성 개념을 국가 간 문화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통상 관계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확대 적용해야 할 당위성은 최근 한국사회의 다인종화·다문화화 추세를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문화다양성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회의 특성에 따른 독특함을 고려하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소수자

12) 제11조 시민 사회의 참여

당사국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의 노력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13) 가족구성 비율 중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계층, 사회통합분야에서 차이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에서 참고가능하다.

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활용방법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문화다양성 협약의 내용은 이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의 적용은 그 범위와 방향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과 상이하게 단일민족의식이 매우 강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문화다양성이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의 문화 보존보다는 점점 사라져가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자원이나 개인의 창조성 극대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 정부가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사회로의 편입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노력은 문화다양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문화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면을 고려한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화다양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논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문화다양성을 적용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의 소수자를 중심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이들의 생존권적 문화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김세훈(2006), 약자와 소수자의 문화권과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p.25-41
- 김정수(2008). 세계화, 문화산업, 그리고 문화정책: 문화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른 정책적 딜레마와 대응방안.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2008. 1월. pp.266-289.
- 돈더스, 이본(2008). 문화다양성과 인권, 문화정체성을 위한 권리인가?.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서울: 집문당. pp.19-41.
- 문시연(2005). 문화적 예외vs 문화적 다양성 논란에 대한 연구.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5. pp.1-13
- 문시연(2007). “문화다양성 vs 세계화 논란”에 관한 연구. 프랑스학연구, 41. pp.151-174.
- 박경태(2008). 소수자와 한국 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박선희(200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프랑스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3). pp.195-217.
- 양기근(2001). 세계화시대의 평화의 문화 실현전략. 고향논집 29. pp.121-136
- 오불젠, 니나(2008).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문화다양성 협약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서울: 집문당. pp.107-129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2006).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한글판 선언문, 200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자료집, 참고자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역(2006).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한글 번역문, 2006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포럼 자료집, 참고자료.
- 이기석(2011). 문화다양성협약 이후 전통예술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 이동연(2006).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자본의 논리. 문화과학 47, 특집 1: 신자유주의 세계화 비판. pp.64-89.

- 이성미(2006). 프랑스 문화다양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우(2004). 개념- 뿌리들(下), 철학아카데미.
- 이종일(2010). 다문화 교육에서 '다양성'의 의미. *사회과교육연구*, 17(4), pp.105-120.
- 정갑영(2008). 문화다양성 협약과 한국의 문화정책,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엮음. 서울: 집문당. pp.263-282.
- 최영재(2009). 국제통상관계속의 스크린 쿼터와 국내논쟁.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강클리니, 네스토르 가르시아(2005). 세계화와 정체성 논의에 대한 또 다른 시각. 김창민 외 편역, *세계화시대의 문화논리*. 파주: 한울. pp.117-140.
- Carter A.(2005). *Direct Action and Democracy Today*, 조효제 역(2007). *직접행동 -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교양인.
- Crane, D.(2002). "Culture and Clobalization", *Global culture: Media, Arts, Policy, and Globaliz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1-28.
- Kantcheff, C.(2005). Diversité culturelle: une lutte d'exception, *Politix*, 2005.2.3.
- Kymlicka, W.(1995). *Multicultural Citizenship :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 장동진 역(2010). *다문화주의 시민권*. 파주: 동명사.
- Martiniello M.(2002). *Sortir des ghettos culturels*, 윤진 역(2008).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파주: 한울.
- Sandel, Michael J.(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파주: 김영사.
- Tomlinson, J.(1999). *Globalization and Culture*, Cambridge : Polity Press.
- Warnier, Jean-Pierre(1999). *La mondialisation de la culture*, 주형일 역(2000). *문화의 세계화*, 파주: 한울.
- Wood, Peter(2003). *Diversity: the invention of a concept*, 김진석 역(2005). *다양성: 오해와 편견의 역사*. 서울: 해바라기.
- Wiegand, Patrick(1992). *Places in the primary Schoo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laces at Key Stages 1 and 2*. London: The Falmer Press.
- Wiegand, Pattick(2006). *Learning and Teaching with Maps*. London: Routledge.